



제 438국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200미터 이내에 실외사격장 설치 제한〉

■ 김용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822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세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용만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6. 2. 12.
3. 회부연월일 : 2026. 2.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병원·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의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주변에는 실외사격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복지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 관리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에 대해서도 안전을 위해 실외사격장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의 2부터 제8호의4까지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00미터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실외사격장의 설치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의2, 제8호의3, 제8호의4).

현행	개정안
제8조(사격장 설치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주변에는 실외사격장을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지형지물(地形地物) 등이 있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사격장 설치의 제한) ----- ----- ----- ----- ----- ----- ----- -----.
1. 관공서	1. ~ 8. (현행과 같음)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병원	
4. 공원	
5. 사찰 또는 교회	
6. 주택	
7.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8.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신 설>	8의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신 설>	8의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

현행	개정안
<u><신 설></u>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u>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u> 8의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u>장애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u> 9. (현행과 같음)

현행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사격장을 실외사격장과 실내사격장으로 구분하고, 그 종류·구조·위치·설비 및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¹⁾ 같은 법 제6조는 사격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경찰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²⁾

1)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사격장의 종류 등) ① 사격장은 실외사격장과 실내사격장으로 구분하고, 그 종류·구조·위치·설비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격장설치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격장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위치에 관한 기준) 사격장의 위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클레이사격장, 라이플자연식사격장, 권총자연식사격장 및 공기총 자연식사격장은 사좌의 바깥면으로부터 법 제8조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까지는 200미터 이상, 그 밖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 등까지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클레이사격장, 라이플격벽식사격장 및 라이플자연식사격장, 권총격벽식사격장 및 권총자연식사격장, 공기총자연식사격장은 사좌의 바깥면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구역에 시가지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3. 라이플복도식사격장 및 라이플격벽식사격장, 권총복도식사격장 및 권총격벽식사격장, 공기총복도식사격장 및 공기총격벽식사격장, 석궁실내사격장은 사좌의 바깥면으로부터 법 제8조에 따른 시설·장소 또는 그 밖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 등의 부지까지 각각 별표 15의2*에 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사격장의 종류는 본 검토보고서 00면의 참고 1에 기재되어 있고, [별표 15의2]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 등에 대한 사격장별 안전거리는 본 검토보고서 00면의 참고 2에 기재되어 있음.

2)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사격장의 설치허가) ① 사격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서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격장의 위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사격장 및 석궁사격장: 경찰서장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³⁾은 관공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병원, 고원, 사찰 또는 교회, 주택, 어린이집, 유치원, 공항, 고속도로 주변 200미터 이내에는 사격장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그리고, 같은 법 제8조 단서는 예외적으로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지형지물(地形地物) 등이 있는 장소로서 방탄·방음 등 위해 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복도식 또는 격벽식 사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⁴⁾에는 실외 사격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연혁을 살펴보면, 1961년 12월 30일 제정·시행된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제6조는 다수인이 집합하는 건조물 등 사격장의 설치를 금지하고, 운동경기 등 필요한 때에는 보안상 충분한 시설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⁵⁾

2. 제1호 외의 사격장: 시·도경찰청장

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사격장 설치 제한장소 등) ① 법 제8조제7호에 따라 사격장 설치가 제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수렵장 설정 제한지역.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공항

3. 「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의 자동차전용도로 및 같은 조 제3호의 고속도로

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사격장 설치 제한장소 등) ② 법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지형지물(地形地物) 등이 있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방탄·방음 등 위해 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복도식 또는 격벽식 사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사격장 설치 장소의 주위가 계곡 또는 언덕 등으로 되어 있어 자연방탄벽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3. 사격장 설치 장소의 주위에 발사탄이 튀어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흙둑 또는 방탄벽 등의 특별한 보안설비를 하는 경우

5) (구)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제6조 (설치에 대한 제한) 관공서, 학교, 병원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건조물, 주택, 공원, 사찰, 교회, 해변이나 주별이 통행하는 하천 또는 급류구로부터 5

이를 고려하면, 현행법 제8조에서 학교 등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실외사격장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다수인이 모이는
곳에서 총기 사고 등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실외사격장의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지역에 「아동
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동 시설에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다수의 아동과 노인 및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이 포함되고, 동 시설의
성격은 현행법 제8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주택, 학교 등과 유사하며,
동 시설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살펴보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는 보호대상아동⁶⁾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이 있음.⁷⁾

백미터 이내의 장소에는 사격장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운동경기 기타 특히 필요한 때
에는 보안상 충분한 시설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6)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7)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
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
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12월 31일 기준 아동양육시설 239개(보호아동 8,609명), 학대피해아동쉼터 151개(보호아동 433명), 공동생활가정 520개 시설(보호아동 2,505명)이 운영 중임.

< 아동복지시설 현황 >

시설	시설 개수(개)	보호아동 인원(명)
아동양육시설	239	8,609
아동보호치료시설	12	400
자립지원시설	15	214
아동일시보호시설	20	248
학대피해아동쉼터	151	433
아동 상담소	8	
아동 전용시설	6	
공동생활가정	520	2,505
합계	971	12,409

자료: 보건복지부, 2025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 I(생활시설 4종 및 이용시설 2종)II(공동생활가정) 2024년 12월 31일 현재

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 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협동돌봄센터: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종사자가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10. 아동보호전문기관

11.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12.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13.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14.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노인복지법」 제31조 등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재가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등),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가 있음.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노인복지시설은 96,430개, 입소정원은 412,917명임.

< 2024년 기준 노인복지시설 현황 >

종 류	시 설	시설 수(개)	입소정원(명)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166	9,567
	노인공동생활가정	72	614
	노인복지주택	43	9,231
	소 계	281	19,412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4,640	236,36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555	14,533
	소 계	6,195	250,898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454	0
	경로당	69,260	0
	노인교실	1,221	0
	소 계	70,935	0

8)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종 류	시 설	시설 수(개)	입소정원(명)
재가노인복지시설	단기보호서비스	60	255
	방문간호서비스	376	0
	방문목욕서비스	4,794	0
	방문요양서비스	8,668	0
	복지용구지원서비스	718	0
	재가노인지원서비스	339	0
	주·야간보호서비스	3,790	142,352
	소 계	18,745	142,607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39	0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215	0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20	0
합 계		96,430	412,917

자료: 보건복지부, 2025 노인복지시설 현황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체육시설, 점자도서관 등),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등이 있음.⁹⁾

- 9)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 2의2.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의 권익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보건복지부의 2025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은 1,524개소(정원 31,229명),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1,628개소, 장애인의료재활시설 19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815개소가 있음.

<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2024년 12월 기준) >

시설	시설개수(개)	장애인 수(명)
장애인거주시설	1,524	현원 26,987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1,628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19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815	21,761
합계	3,986	

자료: 보건복지부, 2025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또한,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인근에 실외사격장의 설치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에는 방문요양서비스 등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이 있고, 해당 시설 주변에 실외 사격장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하는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등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고려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경찰청에 따르면, 실외사격장은 2026년 4월 2일 기준 전국에 17개소가 있고, 17개의 실외사격장 주변 200미터 이내에는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은 없음.

< 전국 실외사격장 현황(2026년 4월 2일 기준) >

번호	사격장명	주소	허가일
1	태릉종합사격장	서울 노원구 화랑로 681	2003. 4. 9.
2	대구종합사격장	대구 북구 문주길 170	2019. 6. 17.
3	옥련국제사격장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255	1999. 1. 27.
4	경기도사격테마파크	경기 화성시 양감면 사격장길 142	2025. 1. 15.
5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훈련원	경기 이천시 석동로 167	2016. 6. 10.
6	횡성스포랜드	강원 횡성군 금계로 380-57	2000. 11. 13.
7	알펜시아 바이애슬론	강원 평창 대관령면 스포츠파크길 199	2022. 10. 19.
8	춘천공공사격장	강원 춘천시 자라우새길 89	2021. 6. 3.
9	청주종합사격장	충북 청주시 청원구 도원세교로 369	1990. 10. 12.
10	진천 국가대표 사격장	충북 진천군 광혜언면 중리1길 11	2011. 7. 6.
11	단양사격테마파크	충북 단양군 노동장현로 207-17	2024. 8. 2.
12	서산시종합사격장	충남 서산시 충의로 359-33	2017. 1. 19.
13	전라북도종합사격장	전북 임실군 청웅면 청운로 168-46	2003. 1. 27.
14	전라남도국제사격장	전남 나주시 사격장길 82	2008. 5. 30.
15	문경종합사격장	경북 문경시 사격장길 155	2001. 4. 3.
16	창원종합사격장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99번길 63	1982. 4. 23.
17	대유사격장	제주 서귀포시 상예로 381	2013. 1. 21.

자료: 경찰청

경찰청은 실외사격장 설치 제한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모두를 실외사격장 설치 제한시설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경찰청은 개정안과 같이 실외사격장 설치가 제한되는 복지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할 경우 허가 가능시설과 제한 시설 간 차이가 명확하지 않고, 복지시설은 모두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허가 가능 시설과 제한 시설 간 합리적 구분기준 설정이 곤란하며,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 ① 방탄·방음 등 시설을 갖춘 사격 시설, ② 자연방탄벽 형성, ③ 흙독·방탄벽 등 특별한 보안 설비 구비 시 예외적으로 실외사격장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모두를 실외사격장 설치 제한시설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345

참고 1 사격장의 종류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사격장의 종류(제2조제1항 관련)

종류	구분
1. 클레이사격장 (산탄총을 사용하여 산탄으로 클레이피전을 사격하는 사격장)	가. 트랩사격장(1개 움의 방출기에서 방출하는 클레이피전을 사격하는 사격장) 나. 스킵트사격장(2개 움의 방출기에서 서로 교차 방출하는 클레이피전을 사격하는 사격장)
2. 라이플사격장 (라이플소총 또는 산탄총이나 산탄총 외의 활강총을 사용하여 외알탄으로 사격하는 사격장)	가. 복도식사격장(탄도 전체를 덮는 사육이 설치된 사격장) 나. 격벽식사격장(발사한 탄알이 사격장 밖으로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사좌(射座)로부터 탄알받이 사이에 방탄벽을 설치한 사격장) 다. 자연식사격장(복도식과 격벽식 외의 실외사격장)
3. 권총사격장 (권총을 사용하여 사격하는 사격장)	가. 복도식사격장(탄도 전체를 덮는 사육이 설치된 사격장) 나. 격벽식사격장(발사한 탄알이 사격장 밖으로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사좌로부터 탄알받이 사이에 방탄벽을 설치한 사격장) 다. 실내사격장(실내에 설치된 사격장) 라. 자연식사격장(복도식과 격벽식 외의 실외사격장)
4. 공기총사격장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사격하는 사격장]	가. 복도식사격장(탄도 전체를 덮는 사육이 설치된 사격장) 나. 격벽식사격장(발사한 탄알이 사격장 밖으로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사좌로부터 탄알받이 사이에 방탄벽을 설치한 사격장) 다. 실내사격장(실내에 설치된 사격장) 라. 자연식사격장(복도식과 격벽식 외의 실외사격장)
5. 석궁사격장 (석궁을 이용하여 사격하는 사격장)	가. 실내사격장(실내에 설치된 사격장) 나. 실외사격장(실외에 설치된 사격장)

참고 2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 등에 대한 사격장별 안전거리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5의2]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 등에 대한 사격장별 안전거리(제3조제3호 관련)

사격장	거리
라이플복도식사격장	22구경 주변 타격식 라이플소총만을 사용하는 사격장은 15미터 이상, 그 밖의 사격장은 25미터 이상
라이플격벽식사격장	22구경 주변 타격식 라이플소총만을 사용하는 사격장은 15미터 이상, 그 밖의 사격장은 50미터 이상
권총복도식사격장	22구경 주변 타격식 라이플권총만을 사용하는 사격장은 15미터 이상, 그 밖의 사격장은 25미터 이상
권총격벽식사격장	22구경 주변 타격식 라이플권총만을 사용하는 사격장은 15미터 이상, 그 밖의 사격장은 50미터 이상
공기총복도식사격장 및 공기총격벽식사격장	3미터 이상
석궁실내사격장	1미터 이상

참고 3 전국 사격장 현황 (2025년 12월 기준)

○ 전국 사격장 현황 (괄호안은 실외사격장 수)

(단위: 개, 2025년 12월 기준)

시도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남부	합계
사격장	28 (1)	8	9 (1)	17 (1)	5	9	9	2	22 (2)	
시도청	경기 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21
사격장	5	21 (3)	19 (3)	12 (1)	11 (1)	10 (1)	15 (1)	13 (1)	6 (1)	(17)

자료: 경찰청